

「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관계없는 항공점검기관 삭제

(안 제1장 1.2, 제4장 1.3, 2.1, 3.2 등)

* 교통안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나. 상위법령*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관계없는 항공점검대상 삭제

(안 제4장 1.2, 1.3, 2.1, 3.2, 별표4 등)

* 교통안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다.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분야 모든 감독관을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통일(안 제4장 2.3)

*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국토부 훈령) 제2조 제16호

라. 표기상의 오류 및 오타 정비 등(안 제1장 3.5.1, 제3장 2.2, 2.3 가목, 제4장 1.2, 2.1, 2.4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1-55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